

대전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103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김종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37,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2.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사 성기관

별 지

청 구 원 인

I. 당사자 관계

- 원고는 소외 C주식회사(이하 '소외 C'이라 합니다.)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법인입니다.[갑 제1호증의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1호증의2 지급명령, 갑 제1호증의3 집행문, 갑 제1호증의4 사건일반내용(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차116)]
- 소외 C은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고, 소외 C 소유의 충남 서산시 D 주차장 454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17. 접수 제103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호증의2]
- 피고 E은 2020. 3. 16. 소외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17. 접수 제10391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연인입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고 B은 소외 C의 등기상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소외 C의 대주주이며, 법인격부인에 따라 소외 C의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입니다.[갑 제2호증]

II. 손해행위 취소

1. 원고가 소외 C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원고는 충남 논산시 F 지상에 신축하는 G조합 연산지점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에 대해 소외 C로부터 금 130,9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소외 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금 6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차116호로 나머지 공사대금 70,900,000원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2,3]

- 원고는 원고를 채권자, 소외 C을 채무자, G조합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 금 70,9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단26호로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1 사건일반내용(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단26)]

- 원고는 위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차116)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 70,900,000원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타채49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금 1,093,539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498)]

- 소외 H주식회사는 소외 C에 대해 금 78,100,000원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5호증 사건일반내용(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카단3650)]

- 원고와 소외 H주식회사의 압류가 경합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갑 제6호증의1 채권배당기일통지서, 갑 제6호증의2 배당표]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금 23,585,302원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6호증의2]

-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배당받은 위 금 23,585,302원은 ① 지급명령 신청비용 금 295,000원에 우

1) 130,900,000원 - 60,000,000원 = 70,900,000원

선 충당되고, ② 그 다음으로 2020. 3. 24.(지급명령 부분 송달 다음날) ~ 2020. 10. 29.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5,128,109원²⁾에 충당되고, ③ 나머지 금 18,162,193원³⁾이 원 본에 충당됩니다.[갑 제1호증의4, 갑 제6호증의2]

따라서 원고가 소외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금 52,737,807원⁴⁾ 및 이에 대한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입니다.

2. 소외 C의 무자력

-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이외에도, 소외 H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C은 원고, 소외 H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외 H주식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금원만 배당받았을 뿐이고, 여전히 많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2]

- 소외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다액의 근저당권, 가압류로 인하여 잉여가치가 없고, 소외 C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J 신용조회]

따라서 소외 C은 무자력임이 자명합니다.

3. 사해행위

- 소외 C은 무자력 상태였고, 원고, 소외 H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2) $70,900,000\text{원} \times 12/100 \times 220\text{일}/365\text{일} = 5,128,109\text{원}$

3) $23,585,302\text{원} - 295,000\text{원} - 5,128,109\text{원} = 18,162,193\text{원}$

4) $70,900,000\text{원} - 18,162,193\text{원} = 52,737,807\text{원}$

소의 C이 피고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B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바, 이는 책임재산의 담보가치를 저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갑 제3호증]

- 피고 E이 피고 B에게 금 300,000,000원이라는 큰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인인 소의 C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피고 E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카합3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① 처음에는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② 나중에는 소의 C도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가처분이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카합36)]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E이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누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소의 C의 무자력 여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 E과 소의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소의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17. 접수 제10391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법인격 부인)

1. 소의 C의 지배구조

소의 C은 피고 B(대표이사) 50.1%, B의 동생 K 25%(사내이사), B의 형 L(종전 감사) 25%의 지분으로 각 구성되어 있습니다.[갑 제9호증 C 주요주주현황]

피고 B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소외 C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2. 소외 C와 피고 B 재산의 혼용

피고 B은 소외 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소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피고 B은 본인이 피고 E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E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외 C와 피고 B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피고 B이 피고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해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나중에 소외 C이 연대책임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해 준 점, 피고 B이 소외 C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점, 나머지 주주도 피고 B의 동생과 형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재산과 소외 C의 재산은 혼용되고 있다고 볼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법인격부인

- 소외 C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는 피고 B 본인,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B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외 C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피고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소외 C로 하여금 피고 B의 피고 E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도 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8호증]

5) 전체를 합산하면 100.1%에 해당합니다. 피고 B의 지분이 50.10%로 표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B이 소외 C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주식 중 50%지분 + 1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의 임원진이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는 형식적인 것일 뿐 법인 운영이 실질적 운영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질적 운영자가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의 재산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005. 11. 30. 선고 2004가단 198872 판결]

대여금 당시 사내이사 1인이고, 감사가 사내이사의 가족이고, 발행 주식의 전부를 사내 이사가 전부 소유하고, 대여금에 대해 법인이 아니라 사내이사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대여금 채무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법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사내이사 개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17. 선고 판결]

-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소외 C을 내세워 본인의 채무 부담을 면탈하려는 것인바,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소외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 52,737,807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IV. 결론

- 피고 E이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E과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17. 접수 제10391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피고 B은 소외 C이라는 법인으로 내세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52,737,807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